

# 2019년도 제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5. 15.(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전용준(분과위원장), 박성호, 임진모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5건(안건번호 제2019-32588호~3268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2019년 상영관에서 개봉한 영화를 불법 녹화한 것(에벤저스 엔드게임) 등을 비롯하여, 2018년 개봉한 영화 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사안들로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B 위원 : 32588호부터 32687호까지 100건의 경우 모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최신 대중가요와 '로마' '메갈로돈' 등 최신영화의 불법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 C 위원 :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권한없이 복제, 전송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는 없으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9년 제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22.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